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8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0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3. 27.
판 결 선 고	2019. 4. 10.

주 문

1. 피고가 2017.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0,415,7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52,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8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간 관계

1) 원고 A, B은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원고 B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8. 10. 29. 설립된 회사로서 역시 원고 A이 D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원고 B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D의 발행주식은 201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A이 45%, 원고 B이 25%, 원고 C가 30%를 각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B은 2014. 10. 1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의 토지 매수 등

1) D은 2014. 9. 23. E로부터 유일한 영업용 재산인 [redacted]시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호텔사업권을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4.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2) D은 2014. 10. 29. 34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억 3,600만 원, 지방교육세 1,360만 원, 농어촌특별세 680만 원 합계 1억 5,640만 원을 신고하고, 2014. 10. 30. 위 1억 5,640만 원을 납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8

3) E의 주주들은 2015. 4. 3. E를 상대로 2014. 10.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관한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0482). 위 법원은 2016. 4. 21.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7. 확정되었다.

4) E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48), E와 D은 2016. 10. 20. "D이 E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이 사건 이전등기는 2017. 1. 9.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간주취득세 부과

1) 피고는 2017. 7. 10. 원고들이 D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100,415,7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52,930원(가산세 포함) 합계 108,968,6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7. 7. 20.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7. 8.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8

E는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E가 D에게 유일한 영업용 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그에 관한 사업권을 매도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의 폐지나 중단을 초래하거나,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그런데 E가 2014. 10.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관한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한 결의에 대하여는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D에게 미친다(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법 제37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위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8

용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화해는 E의 2014. 10. 2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라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하여 사실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과 같으므로 여전히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2)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사실은 이 사건 화해의 전제로서 당사자인 E와 D이 서로 양해하고 있던 사항이므로 그러한 사실에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는 2016. 10. 20.에 있었고, 그에 따라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1. 9. 말소되었으므로, 그것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화해는 위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합의해제라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을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발생일 이후의 사정변경'으로서의 이 사건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해 주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화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이유로 성립된 것이므로 역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발생일 이후의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8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원

판사 정승진

판사 이선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8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